

UR협정타결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김 영 찬 / 한국식품연구소 책임연구원

I. 서 언

작년 12월 15일 7년동안 계속되었던 제8차 라운드인 UR이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질서는 자유무역질서에 입각한 글로벌리즘(globalism, 세계주의)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규모면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116개국이 협상에 참가해 최대의 협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국제무역의 원칙은 기능이 강화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내에서 다루어 지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역의 블럭화를 주창한 EC, NAFTA등 경제블록은 배타적 지역주의 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UR타결이후 세계경제질서는 “국경없는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간의 경제 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당분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EC, 일본의 다극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각국이 자국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전개될 세계교역질서에 적응하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한편 우리의 식품산업은 원료수급면에서 주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수입완제품의 시장 잠식도 우려되는 등 UR협정타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식품산업분야는 쌀 시장 개방저지로 대표되는 농업보호라는 대 명제아래 그 입장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R협정부문별 주요 사안을 살펴보고, UR농산물 협정이 우리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을 원료 수급 문제와 완제품 수입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 보며, 업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II. UR협정의 부문별 타결안 요약

1. UR협정의 배경 및 의의

UR은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다자간 협상의 하나로서 지난 1947년 설립된 GATT는 기본적으로 세계무역에 기본질서를 부여하는 협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GATT는 자유, 무차별,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춰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이면서 동시에 국제무역기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을 이루어오던 GATT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요 선진국이 국제수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면서 실효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한편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체제 밖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GATT 규정의 폭넓은 예외 조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무역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 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었지만 과거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GATT 체제내에서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표 1. 그 동안의 GATT 다자간 무역협상

회 수	협상기간	참가국	양허품목수	총양허액	평균 인하율	비 고
1차(Geneva)	1947	23	45,000	100억달러	—	
2차(Annecy)	1949	32	5,000	—	—	
3차(Torquay)	1950/51	34	8,700	—	—	
4차(Geneva)	1956	22	3,000	—	—	
5차(Geneva)	1961/62	23	4,000	25억달러	7%	딜론라운드
6차(Geneva)	1964/67	46	30,300	49억달러	35%	케네디라운드
7차(Geneva)	1973/79	99	250,000	400억달러	33%	동경라운드

표 2. UR협상 일정 및 향후 일정

- △ 89년 9월=우루과이의 몬타 델에스테에서 1백8개 UR회원국 UR협상 개시선언
- △ 91년 12월=美 EC간 대립으로 협상진전이 없다가 둔켈총장이 직권으로 농산물협상 초안 제시
- △ 92년 1월=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 둔켈초안 거부
- △ 92년 3~4월=한국, 공산품 및 농산물 개방계획서 제출
- △ 92년 11월=美 EC 유지작물 및 수출보조금 감축등 농산물협정타결
- △ 92년 11월 25일=프랑스의회, 美 EC합의안 거부결정
- △ 92년 7월=무역협상위원회, 협상을 93년 12월 15일 이전에 타결기로 일정확정
- △ 93년 12월 15일=UR협상타결

〈향후일정〉

- △ 94년 1~3월=개별 UR협정 조문 법제화. 최종의정서에 첨부할 공동선언문작성과 향후 작업계획논의
- △ 94년 4월 12~14=최종의정서 가서명
- △ 94년 12월까지=UR협상결과에 대한 각국의 비준완료
- △ 94년 12월중=UR협상 결과이행 및 발효일자 결정을 위한 각료급회의
- △ 95년 1월=UR협정 발효

2. 각 분야별 UR협정안

(1)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기능〉

WTO는 UR협정, GATT등의 다자간 무역협정 및 소수국간 무역협정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며, 또한 가맹국간의 무역교섭 및 그 교섭결과의 실시를 위한 틀로 제공한다. 현행계약적 성격이 강한 GATT체제를 확대·개편한 다자간 국제무역 기구임.

〈조직〉

각료회의를 실시하고 최소한 2년에 1회 개최한다. 각료회의의 기능을 폐회중에는 일반이사회가 수행하며, WTO조직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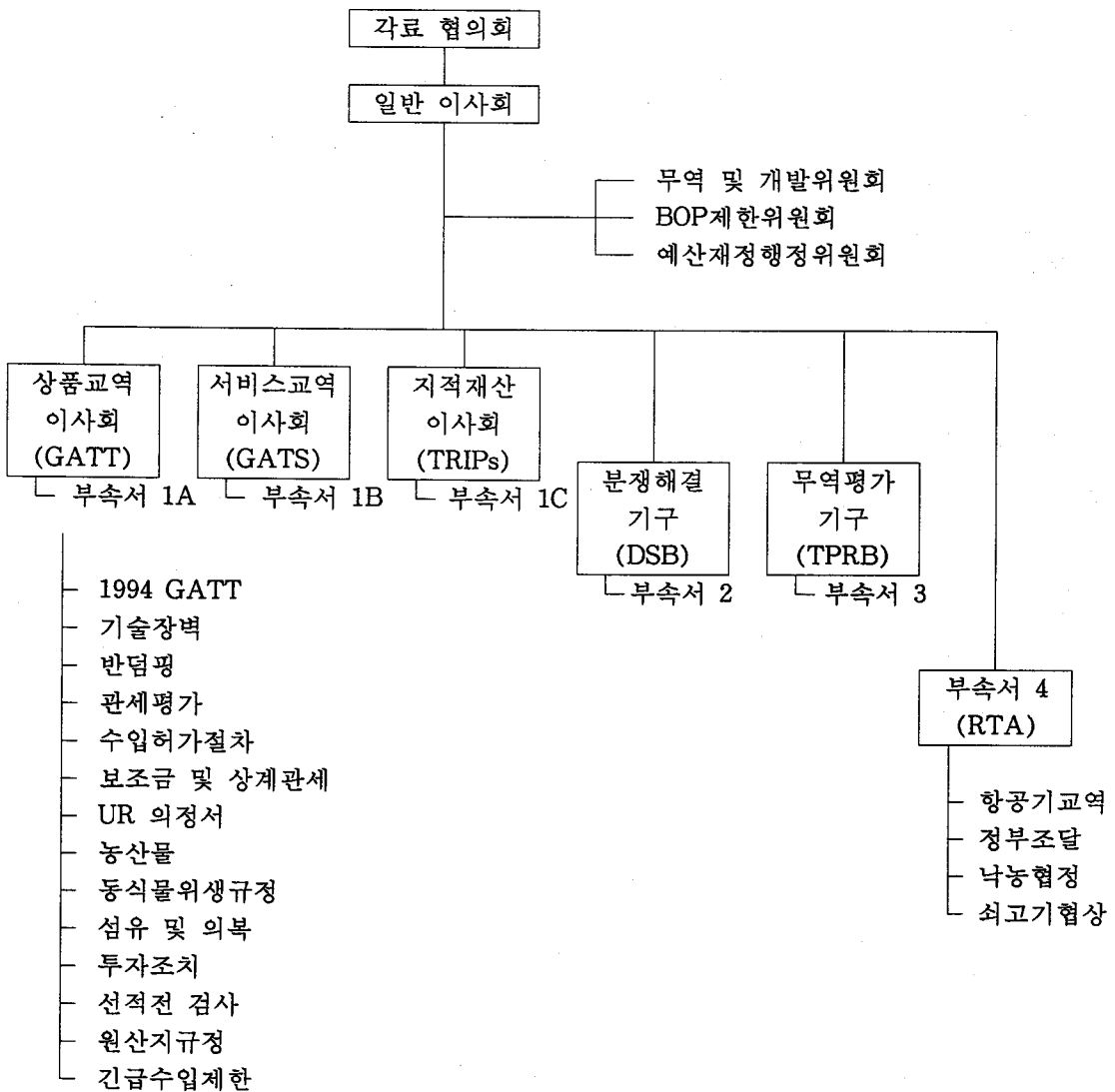


그림 1. WTO의 조직도

〈의사결정방식〉

WTO는 기본적으로 과거 GATT 체제와 같이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음.

〈개정〉

본 UR협정 또는 GATT등 각 협정의 개정은 가맹국의 $\frac{2}{3}$ 수락으로 하며 모든 가맹국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2) 공산품 관세인하

- 각 회원국의 관세율 '86. 9월 대비 $\frac{1}{3}$ 이상 인하하고, 최고 관세율을 제시(양허)하는 품목도 크게 확대하여 관세장벽을 대폭적으로 완화

표 3. 주요국의 관세 양허 계획

(%, 88년 수입액 가중)

	關稅率引下	平均讓許稅率	讓許範圍
韓 國	54	8.2	90
美 國	37	2.9	100
日 本	60	1.0	98
E C	33	4.0	100

註：美, 日, EC는 '93. 11 기준 추정치

- 금번 UR에 새로이 제시된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무세화). 관세의 하향평준화(조화)추진

표 4. 무세화·관세조화 참여 품목

分 野	Quad合議品目	參 與 品 目		不 參 品 目
		參 與	條 件 附	
鐵 鋼	34	34	—	—
建 設 裝 備	10	6	4	—
農 業 機 械	4	1	3	—
醫 療 機 器	13	4	7	2(X선기기, 의료·수의용기기)
家 具	2	1	1	—
醫 療 品	10	4	2	4(페니실린, 항암제등)
맥 주	1	—	—	1
증 류 수	1	—	—	1
計 (關稅化)	75	50	17	8
化學製品 (關稅調和)	196	193	—	3(의약품, 벤젠등)

註：條件附 品目은 UR規定上 履行期間(5년)을 超過하여 8~10년의 履行期間을 확보한 品目임.

- 섬유, 신발, 가죽제품등 우리의 주요 수출관심품목에 대하여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관세 인하를 강력히 관철하여 다수 품목의 관세 인하 관철

(3) 서비스 시장

- 모든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
- 단순히 재화가 국경을 이동하는 무역과 달리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의 국경 거래에 추가하여 서비스의 공급주체 즉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을 광범위한 분야를 자유화 협상 대상으로 규정
- 자유화 추진 방식은 모든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시장개방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약 5년주기)으로 추진
- 우리의 최종 양허표는 GATT 사무국 서비스업종 분류표의 11개분야중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등 3개 분야를 제외한 8개분야에 걸쳐 78개 업종을 양허

표 5. 주요국가의 서비스분야 양허 업종 비교

	韓 國	美 國	E C	日 本	캐나다	中 國	泰 國
1. 事業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2. 通信서비스(24)	9	15	13	15	8	—	5
3. 建 設(5)	5	5	5	5	5	5	3
4. 流 通(5)	4	4	4	4	5	—	1
5. 教 育(5)	—	2	4	4	—	—	—
6. 環 境(4)	3	4	3	4	4	—	—
7. 金 融(17)	15	16	16	16	16	12	13
8. 保健·社會서비스(4)	—	4	2	2	—	—	—
9. 觀光(4)	3	4	2	3	2	1	2
10. 文化·娛樂·스포츠(5)	—	4	3	4	—	—	1
11. 運送(35)	8	15	17	16	20	7	11
12. 其他(1)	—	—	—	—	—	—	—
計(155)	78	107	110	105	95	46	55

(4) 반 덤핑

- 덤핑 판정시 비교가격이 되는 국내 판매 가격등 정상가격이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상적 거래로 인정
- 덤핑 판정시에는 수출 가격과 수출국이 국내 판매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국내판매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수출가격을 생산비·관리비 및 이윤 등을 합산한 가격(소위 구성가격)과 비교할 경우가 있을 때, 이 경우 관리비나 이윤을 실제자료를 기초로 산정
- 덤핑 판정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경우, 양가격을 가중 평균이 되었거나 개별 거래 가격이 되었거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하는 원칙 설정
-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내 국내업체의 제소가 있어야 하는데 동 제소의 기준을 명료화 하고 노동조합에도 제소자격 인정

표 6. UR 반 덤핑 협정과 기존 반 덤핑 협정의 비교

구 분	기존 반덤핑 협정	UR 협 정	비 고
<p>1) 기존규범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 이하 판매의 정상가격 인정 ○ 구성 가격 산정 ○ 가중평균에 의한 가격 비교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 비교방법) ○ 조사종결을 위한 de minimis 기준 ○ 제소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상거래상 이루어진 가격만 정상가격으로 인정 *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원가이하 판매는 정상가격으로 불인정 ○ 원산지국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관리, 판매비 및 이윤 가산 * 미국은 일정기준 사용(관리비는 10%, 이윤은 8%) ○ 동일한 거래수준 및 가능한 동시판매 비교 • 선진국은 국내가격은 가중평균, 수출가격은 개별 거래가격으로 비교 ○ 덤핑마진이나 덤핑수입규모가 미미한 경우 조사 종결 ○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 원가이하 판매가격의 정상가격 인정 • 단기간(6~12개월) 이하이거나, 덤핑조사 대상 물량이 적은 경우(20%이하) • 신제품 출하시 가동 초기 비용조정 ○ 실제자료에 의하여 산정 •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윤산정기준 마련 ○ 양시장 가격은 가중평균치 또는 거래별 비교 • 예외적인 경우 국내 가격은 가중평균가격, 수출가격은 개별 가격으로 비교(targeted dumping 인정) ○ 덤핑마진을 2%, 수입시장점유율 3%이하인 경우 조사 종결 ○ 좌동 ○ 추가 • 당해물품의 국내생산자의 명시적 찬성이 50%이상이고 동종제품 국내생산액의 25%이상인 경우 인정 • 노동조합의 제소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국입장 반영 • 다만, 경기순환산업고려 미 반영 ○ 아국입장 반영 ○ 아국입장 일부 반영 • 예외적인 경우의 기존 불명료 ○ 아국입장 일부반영 • 명료화되었으나 수치기준 미흡 ○ 아국입장 일부반영 • 우리측은 주요 국내생산자의 50%이상의 찬성을 명시화 할 것을 주장

구 분	기존 반덤핑 협정	UR 협 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 ○ 반덤핑 관세의 소멸 조항 설정 2) 우회덤핑 규율 ○ 수입국 내 단순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 없음 * 미국등은 기존 반덤핑 관세부과 ○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 상쇄에 필요한 기간만 인정 ○ 현행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출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는 신속한 조사후 부과 ○ 덤핑관세 부과후 5년 내 철폐 ○ 수입구성부품 비용이 완제품중 부품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70%이상, 부가가치 25%이하인 경우 수입부품에도 기존 반덤핑 관세부과 ○ 실제 조사후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이전 150일간 소급효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국입장 반영 ○ 아국입장 반영 ○ 미국 등 수입국 입장이 반영되었으나 수출국 주장도 상당히 반영 ○ 우회덤핑 규율기준의 객관화 ○ 우리입장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조립 및 country hopping 을 통한 우회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조사후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이전 150일간 소급효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입장 반영

(5) 보조금, 상계관세

- 수출입에 직접적인 외국 효과를 갖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협정발효 후 3년이내 철폐
- 직접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해당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회원국의 국내 산업의 피해를 주거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해당국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 판정시 상계관세부과등 보복조치를 허용
- 법률상 모든 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이거나 선별성, 자의성이 없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하되 회원국은 매년 허용되는 보조금의 목록을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제출토록하고 3년마다 회원국의 보조금 제도를 검토

표 7. 보조금 부문의 UR협정과 기존 GATT 협정과 비교

보조금의 구분	기존 GATT협정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연구,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허용)

	기존 GATT협정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
개도국조항	협정에 서명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경쟁 및 개발필요성에 부합되는 수출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허용	극빈개도국이나 소득 천불미만 개도국에만 예외 허용
보조금에 대한 감시	별도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발효후 3년이내 금지보조금은 폐지하고 • 매년 허용보조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3년마다 보조금제도를 검토

표 8.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

- △ 수출관련 지원제도(12개)=무역금융, 수출설비제도, 수출자금대출제도, 수출산업설비금융, 수출용원자재공급지원제도,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해외산업손실준비금,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해외사업소득공제, 해외집대비의 전액손금인정, 지방세감면에 의한 지원
- △ 중소기업관련 지원제도(6개)=무역금융지원상 우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발굴지원, 중소기업재부품기업운전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제품수요자금융지원
- △ 산업일반기원제도(5개)=섬유산업근대화자금지원, 연불수출선박에 대한 지방세비과세, 국민투자기금중 중화학공업시설자금지원, 특별설비자금, 국산기자재사용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조치등
- △ 농림축수산업지원제도(6개)=2중곡가제도, 기타매입(매입비축 출하조정 가격안정 가격예시제 유통예고제), 비료가격보조제도, 임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임산물생산자금지원, 출하조절자금지원

표 9. 무역 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

- △ 수출관련 지원제도(3개)=무역금융, 수출보험제도, 수출용원자재관세환급
- △ 중소기업관련 지원제도(4개)=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업종지원, 섬유산업근대화자금지원, 국민투자기금중화학공업시설자금지원, 특별설비자금, 공업의합리적배치
- △ 농림축수산업 지원제도(5개)=2중곡가제도 기타매입(매입비축 출하조정 가격안정, 가격예시제, 유통예고제), 양축자금지원, 임산물생산자금지원, 출하조절자금지원

(6)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

-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선별 적용 원칙적으론 불인정
- 회색조치(grey area)의 철폐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범위, 기간, 재발동금지기간등 엄격한 규정 제정
- 기존 세이프 가드 조치의 철폐시한 명시
- 세이프가드 발동후 최초 3년간은 보복 면제

(7) 지적소유권

- 상표권
 - 이름, 문자, 숫자, 도형, 색채의 조합을 상표의 등록 대상으로 함.
 - 등록되지 않은 외국의 유명상표도 보호됨.

- 보호기간을 최소 7년으로 무한정 갱신가능
- 지리적 표시
 - 상품의 명성, 품질과 기타 특징이 지리적 원산지와 직접관계가 있는 경우 그 지리적 표시를 보호 대상으로 함.
- 의 장
 - 의장의 보호요건으로 신규성 또는 독창성을 요구
 - 보호기간은 최소 10년임.
- 특 허
 - 환경보호, 진단, 수술방법, 식물·동물 발명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 식물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특허법이나 개별법으로 보호

Ⅲ.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 예측

1. URE타결이 국내 농산물 수급에 미칠 파급영향

(1) 전체적 영향

국민총생산(GNP)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8%에서 10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농산물 수입 개방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2001년에는 2.8%로 격감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파급영향”에 의하면 전체 인구중 농가인구 구성비는 1992년 5백70만명인 13.1%에서 2001년에는 5.1%에 불과한 2백4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농업인구 격감에 따라 농림수산업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에 3백2만명인 16%에서 2001년에는 7.9%인 1백9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농산물 수입은 전체적인 국내 농업경제 성장률을 둔화시켜 농림수산물 무역적자가 1992년에 42억6천만달러에서 2001년에는 1백30억3천만달러로, 농림수산물 성장률도 1.2%에서 0.2%로, 농업성장률도 1.5%에서 0.1%로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격측면

수입개방 첫해인 1995년에 모든 품목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데 특히 쇠고기의 가격하락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부터 2001년까지 가격변동을 예측할 때 개방폭이 작은 쌀과 닭고기, 양념채소류의 가격은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개방폭이 큰 곡물,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은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가격하락이 큰 품목으로 예상되는 쇠고기는 1992년에 kg당 12,200원에서 2001년에는 6,600원으로, 고추는 92년 6백kg당 3,036원에서 2001년에는 1,770원, 감귤은 15kg 1상자당 7,000원에서 5,400원으로 각각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가격진폭이 불안정한 양파는 92년에 kg당 96원에서 2001년에는 200원으로, 마늘은 3kg당 4,151원에서 5,200원선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3) 자급률 측면

지난 1992년 현재 자급률 83~104% 수준에 있는 10개 주요 품목의 자급률은 수입개방에 의하여 2000년까지 41~99%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자급률의 하락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쇠고기, 감귤 등이며 닭고기와 양념채소류는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96~99%의 자급율이 전망된다. 즉, 수입개방이 되어도 자급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목은 쌀, 닭고기, 고추 등이나 콩은 12.2%에서 2.7%로 고구마는 95.7%에서 40.5%로 쇠고기는 43.9%에서 24.3%로, 참깨는 47.7%에서 11.6%로 자급률이 격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생산자 잉여 감소 측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5개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1995년에서 2001년 기간중 총 7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UR이던켈초안에 의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으로 타결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예상치 12조7천억원에 비하여 4조9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서, 특히 쌀은 관세화로 개방될 경우 농가피해액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함으로써 6천억원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농축산물 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역시 쇠고기와 돼지고기인데, 쇠고기는 2001년까지 2조1천81억원, 돼지고기는 1조8천36억원의 피해가 각각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1995년 쇠고기 소비량 239,200톤중 생산량 113,200톤을 제외한 나머지 126,000톤을 수입쇠고기로 충당했는데, 2001년에 가면 전체소비량 286,200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류에서 사과생산량은 1995년에 727,000톤으로 줄어드는 대신, 수입량은 1995년에 16,000톤에서 117,000톤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표 10. 수입자유화에 따른 생산자 잉여 감소분 예측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쌀	532	660	785	909	1,029	1,019	1,260	6,194(49,882)
보 리	582	603	632	663	689	711	730	4,610(3,067)
맥 주 맥	315	363	420	483	546	646	690	3,433(2,284)
옥 수 수	125	145	168	192	217	241	266	1,354(1,787)
콩	171	166	157	146	131	113	92	976(1,304)
감 자	347	411	476	546	614	687	762	3,843(4,080)
고 구 마	455	430	403	374	348	321	295	2,626(2,673)
쇠 고 기	1,732	2,484	2,500	2,926	3,618	3,565	4,256	21,081(22,343)
돼 지 고 기	1,092	1,671	1,671	3,611	3,537	3,435	3,306	18,036(5,548)
닭 고 기	226	309	393	0	0	66	138	1,131(1,231)
감 꿀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7,949(9,783)
고 추	199	263	256	299	294	350	356	2,017(7,056)
마 늘	609	159	592	300	601	424	631	3,316(10,210)
양 파	47	29	42	41	46	49	53	307(1,579)
참 깨	162	157	149	138	125	109	89	928(0)
계	7,340	8,133	10,442	11,293	13,541	12,276	14,777	77,802(126,935)

()내의 수치는 UR타결전 덴켈초안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적용될 경우의 시산치임.
 자료원 : 농촌경제연구원

표 11. 국내산 주요 식품원료의 생산·수입 및 경쟁력 현황

원료명	생산량 (천톤)	생산액 (억원)	수입량 (천톤)	자급률 (%)	국내외 가격차	주요 가공 제품	주요 관심국
쌀	5,629		-	102.7	380	주류용, 기타 쌀이용 식품	미국, 호주, 태국
보 리	357	2,155	91.3	85.0	348	주류용(주정)	미국, 호주, 캐나다
옥수수	105	960	6,008	1.8	440	주정, 전분	미국, 중국
대 두	223	2,137	1,093	17.2	640	장류, 두부, 제과	미국, 중국, 브라질
감 자	504	1,300	7.4	98.5	363	주정, 전분, 후렌치후라이	미국, 화란, 덴마크
고구마	374	1,250	20.4	94.9	695	주정, 전분	EC, 일본, 중국, 태국
참 깨	32	2,102	27	55	918	참기름, 제과	중국
감 귤	589	3,951	-	100	297	주스	
고 추	148	4,500	13	91.7	533	고추가루, 고추장, 조미식품	중국, 헝가리
마 늘	454	4,500	1.0	99.8	261	마늘다대기, 마늘장아찌, 마늘가루	중국, 대만
양 파	582	960	5.7	98.7	209	스프, 절임식품, 양파스낵	미국, 핀란드, 대만, 중국, 화란
쇠고기	98		111	46.8	263	쇠고기통조림등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돼 지 고 기	534		6.8	98.8	117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	미국, 덴마크
닭고기	204		-	100.3	212	fast food, 조미식품	미국, 태국
유제품	1,812		79	96.5	-	제과, 분유등 각종 유제 품	미국, 호주, EC, 뉴질랜드
팥		388			570	제빵, 제과, 떡	
땅콩		341			300	땅콩유, 제과	
포도		1,394			생식용 70%	포도주, 포도주스, 건포도	
사과		4,827			300	주스	
메밀		34			470	면류, 묵류	

주: 생산액은 1992년도 금액. 나머지는 1990~1992년 평균

자료원: 농림수산부

2. 농산물 분야의 수입개방 동향 및 일정

1989년 10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수지(BOP)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차별 수입개방예시계획에 의해 수입개방폭을 확대하여 왔고 이에 따라 1993년 12월 현재 총 1,810개 품목에 이르는 농림수산물 중 321개 품목을 제외한 1,489개 품목이 수입개방되어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82%에 달하였다. 또한 1994년 1월부터 농산물 14품목, 축산물 9품목, 수산물 22품목 등 45개 품목이 추가 개방되어 잔존 품목은 수출·입 공고에 의해서 제한되는 142개 품목, 통합공고에 의해서 제한되는 143개 품목 등 총 285개 품목에 불과하게 되며, 수입자유화율도 84%에 달하게 된다. 이들 잔존 수입제한 품목도 1994년 3월까지 그 개방 일정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UR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비교역적 기능(NTC)을 주장한 쌀 등 15개 기초농산물은 1995년 부터 아래 표와 같이 그 수입 방법 및 일정이 타결되었다.

표 12. 수입제한 대상품목의 현황(1994. 1월 기준)

수입제한품목(H.S 10단위 285개 : 1994. 1기준)			
통합공고제한(143개)		수출·입공고(142개)	
(94개)	NTC 15개 품목(116개)		(75개) 임산물 : 6개 수산물 : 46개 (23개)
	49개	67개	
귀리, 녹두, 밀, 메밀 등 곡물과 기타 곡물	쌀(14) 보리(11) 옥수수(7) 대두(1)	맥아(2) 고추(3) 양파(2) 마늘(3) 감귤(9) 참깨, 참기름, 우유 및 낙농제품(3) 쇠고기(13) 돼지고기(8) 닭고기(2)	조란 천연꿀, 인조꿀 사과 과실쥬스, 과즙 생강 녹차 잠사류 조주정 매니옥 땅콩조제품 등
잎담배, 인삼, 전분류 등	감자(6) 고구마(4) 참깨유박(1)		
수산물, 가축, 산식물 등	대용유 배합 사료(5)		
종자, 땅콩			

자료원 : 농촌경제연구원

표 13. 15개 기초 농산물 수입 일정

품 목	1995년	高관 세율 (%)	2004년	高관 세율 (%)	비 고
	최고수입량 (현행세율%)		최소수입량 (현행세율%)		
쌀	51,307(5)		205,228(5)		관세화 개방 10년 유예
맥주보리	70,000(35)	570	70,000	513	95년 관세화 개방
일반보리	14,150(20)	360	23,528	324	"
쇠 고 기	123,000(43.6)		225,000(41.6) 단, 200년 물량		2001년 개방 2004년 40%로 감축

품 목	1995년 최고수입량 (현행세율%)	高관 세율 (%)	2004년 최소수입량 (현행세율%)	高관 세율 (%)	비 고
돼지고기	21,930(25)		18,275(33.4) 단, 97년 1~6월		97년 7월 개방 2004년까지 20%로 감축
닭고기	7,700(20)		6,500(30.5) 단, 97년 1~6월		97년 7월 개방 2004년까지 20%로 감축
유제품 (유장분말)	23,000(20)	99	54,223(20)	49.5	95년 1월 개방
고추	4,311(50)	300	7,185(50)	270	실링관세부과 97년 7월 전면 개방
마늘	8,680(50)	400	14,467(50)	360	
양파	12,369(50)	150	20,645(50)	135	
참깨	6,731(40)	700	6,731(40)	670	
감귤	1,258(50)	160	2,097(50)	144	97년 7월 개방
오렌지	15,000(50)	99	57,017(50)	49.5	
감자	12,424(30)	338	20,708(30)	304	95년부터 관세 상당치를 전면 개방
고구마	11,121(20)	428	18,535(20)	385	
콩	1,032,152(5)	541	1,032,152(5)	481	
옥수수	6,102,100(3)	365	6,102,100(3)	328	

※ 최소수입량은 현행 세율 적용, 최소 수입량을 넘는 물량은 高관세율(관세 상당치, 실링 바인딩)을 적용함.

표 14. 1994년 1월 수입자유화품목(HS 10단위 기준)

구 분	품 목 수	품 목 명
농 산 물	14	○ 맥아(볶은것) ○ 신선배 ○ 복숭아(넥타린 포함) ○ 홍차(2종) ○ 생강 ○ 설탕(2종) ○ 호프(2종) ○ 감귤류(조제품외 기타) ○ 청주 ○ 생사
축 산 물	9	○ 기타소(물소등) ○ 신선냉장돼지고기(3종) ○ 염장돼지고기(복부살, 염장, 훈제) ○ 절단신선냉장닭고기 ○ 커어드
수 산 물	22	○ 오징어(산것, 신선냉장) ○ 가자미(신선, 냉장) ○ 뱀장어(2종) ○ 전갱이 ○ 정어리 ○ 돔 ○ 북어 ○ 문어 ○ 개량조개 ○ 새조개 ○ 게 ○ 새우와 보리새우(2종) ○ 어란 ○ 조기 ○ 고등어 ○ 바지락 ○ 기타 어란 ○ 명란 ○ 서대 ○ 명태

3. 가공식품 수입 동향분석

UR농산물 협정에 따른 수입자유화는 비단 농·수·축산물등의 1차원료 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되는 가공식품도 해당되어,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수입액은 1989년 13억 6천만불

에서 1991년 22억 5천만불로 지난 3년동안 연평균 28.8%의 급증 추세를 나타냈으며, 1992년에는 전년비 4.7%로 그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주요 가공식품별 수입 비중은 육가공품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산가공품, 과채가공품, 식용유지 순이다.

표 15. 가공식품의 품목별 수입 동향

	1989	1990	1991	1992	1992 비율(%)
유가공품	16,491	14,523	42,863	34,534	1.46
육가공품	247,363	361,197	558,614	562,742	23.86
수산가공품	285,563	326,031	561,556	485,475	20.58
과채가공품	108,294	168,362	234,887	277,431	11.76
식용유지	148,207	161,628	233,887	219,604	9.31
곡물가공품	1,042	1,325	1,953	1,534	0.07
빵·과자 및 국수	57,407	80,530	104,782	126,279	5.35
식품첨가물	11,296	17,157	24,125	32,128	1.36
기타 식료품	418,321	471,870	452,966	520,941	22.09
알콜성 음료	60,416	70,388	69,954	81,837	3.47
비알콜성 음료	4,627	7,919	13,207	16,145	0.68
계	1,329,118	1,670,929	2,253,799	2,358,650	10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가공식품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등의 순인데 품질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품목을 대체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리고 저부가가치 품목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등과 같은 개도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표 16. 가공식품의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대상국	금액(백만불)	수입대상국	금액(백만불)
미 국	271.3	브 라 질	61.1
태 국	208.5	중 국	52.5
말 레 이 지 아	95.2	태 국	43.8
호 주	92.6	네 덜 란 드	43.1
일 본	64.1	필 리 핀	35.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1

특히 지난 1992년 8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국교수립으로 그동안 홍콩이나 일본 등 제3국을 통하여 우회수입되던 중국산 가공식품의 수입이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면서 1992년에는 원료 및 가공 식품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외의 대중국 수입액은 10억4천9백만불에 달하여 국교수립전인 1991년 7억9천8백만불 대비 31.4%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을 국제시세와 비교하여 볼 때 취약한 실정이며, 품질면에서도 개도국 제품보다는 우수하나 선진국제품과는 비슷하거나 약간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공식품의 수입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국내 가공식품 시장의 약 10%를 수입 가공식품이 점유하였다고 생각되며, 주요 품목별로는 탈지분유 33.0%, 버터 11.4%, 소시지 7%, 건조고사리 82.9%이다.

대체적으로 가공식품수입에 의한 피해는 고부가가치성 육가공품, 낙농제품, 농축과일쥬스류와 단순저차 가공품인 건조채소류 가공사업에 피해 확대가 예상된다.

표 17.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품 목 명	경쟁력 (국제시세대비)	품 목 명	경쟁력 (국제시세대비)
햄	0.88배	탈지분유	2.42배
소시지	1.12배	전지분유	2.28배
버터	1.64배	사과주스	1.37배
치즈	1.08배	당면	2.11배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년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1

4. 주요 가공식품 품목별 영향 예측

(1) 쌀 이용 식품

쌀은 관세화 유예기간이 10년으로 최소시장접근율도 1~4%로 적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UR협상이 발효되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소위 관세화를 통한 개방은 유예하면서 이 기간중에 국내 소비량 중 극히 일부 물량만 수입하게 된다.

즉, 최소시장접근율은 첫 5년 동안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2%, 이후 5년간인 2000~2004년은 2~4%가 된다. 따라서 1995년 1%에서 시작해 매년 0.25%포인트씩 수입량이 늘게 되어, 오는 1999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2%를 수입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에는 다시 2%에서 시작하여 매년 0.5%포인트씩 늘어 관세화유예기간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소비량의 4%를 수입하게 되며, 이때까지의 수입관세는 현행 세율인 5%를 적용하게 된다.

1986~1988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이 5,130,700톤이므로 이 방식을 도입하면 연도별 쌀 수입물량은 다음과 같다.

표 18. UR협상에 따른 향후 10년간 쌀 수입량

연 도	최소시장접근율(%)	관 세 율	수 입 량(톤)	비 고
1995	1	5%	51,307	현행 관세율
1996	1.25	"	64,134	
1997	1.50	"	76,960	
1998	1.75	"	89,787	
1999	2.00	"	102,614	
2000	2.00	"	102,614	
2001	2.50	"	128,267	
2002	3.00	"	153,921	
2003	3.50	"	179,575	
2004	4.00	"	205,228	
2005	관세 상당치 초과하여 전면개방예상(2004년 재협상)			

한편 정부는 쌀 개방 대책의 일환으로서,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되는 쌀을 전량 가공

용(주정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쌀의 국내·외 가격차가 380%인 것을 감안할 때, 쌀을 이용한 주정공업등 가공 식품 산업은 원료 수입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식육제품

1987년 통조림 수입자유화와 1990년 소시지 수입허용으로 관련 시장이 상당부분 잠식당하여, 1987년 통조림 수입량이 566톤에서 1992년 약 2,000톤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1990년에 수입자유화된 축육소시지는 냉장판매라는 제한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들은 냉동제품으로 수입하여 유통기한을 냉동상태 90일로 허가받아 유통시킴으로써 그 수입 증가율이 1991년에는 149%가, 1992년에는 약 10%가 늘어나는 등 국내 육가공업계를 불안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원료값이 싼 장점을 이용하여 저렴한 제품을 도입,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유통질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료의 수입개방은 1990년 칠면조 고기가 개방되고, 1991년에는 양육이 개방되었으며, 금번 UR협정타결로 우육, 돈육, 계육도 전면 시장 개방된 실정이다.

표 19. 육가공품 수입 현황

(단위 : 톤, %)

연 도	통 조 립		소 시 지	
	수 입 량	전 년 비	수 입 량	전 년 비
1987	566	-	-	-
1988	1,660	193	-	-
1989	2,959	78	-	-
1990	2,560	13	958	-
1991	1,783	30	2,390	149
1992	1,978	10	2,611	9

자료원 : 한국육가공협회

표 20. 연도별 육류 수입량

(단위 : 톤)

연 도	종 목	우 육		돈 육		면 양 고 기	
		수 량	비율	수 량	비율	수 량	비율
1985		2,318		96		17,281	
1986		521		117		15,273	
1987		600		27		16,835	
1988		12,349		87		26,043	
1989		79,208		21		26,834	
1990		104,534		2,583		23,965	
1991		165,534		18,876		18,252	
1992		170,424		220		24,179	

주 : 면양고기 수입량중 90% 이상은 가공수출용·원료용 수량임.

자료원 : 식육계

1) 쇠고기 이용식품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르면 쇠고기 시장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수입쿼터량을 매년 2만 톤씩 늘리고, 관세는 95년 43.6%를 기준으로 2000년까지 매년 0.4%포인트씩 낮춰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대로 수입되면 1986~1989년 국내 쇠고기 평균 소비량 22만7천톤중 2000년에는 쿼터물량이 22만5천톤으로 시장점유율은 수치상 99%에 달하나 쇠고기 소비량의 증가추세로 보아 2000년에는 약 38만톤 가량이 될 것으로 보며 시장점유율은 7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업체 자율 구매 방식(SBS)의 수입물량은 1993년 10%에서, 1994년 20%, 1995년 30%로 증가하여 2000년까지 70%로 확대하게 되었고, 또한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기능을 담당해오던 “마크업(mark up)”도 1993년 100%에서 1995년 70%로, 2000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이후 각 연도별 쇠고기 수입예상 물량은 다음과 같은데 다만 실질적인 수입량은 1993년 쿼터량 6만6천톤인데 반해 배이상인 13만2천톤을 수입한 것과 1994년에도 9만9천톤의 쿼터량 중 약 11만톤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입량은 쿼터량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표 21. UR협상에 따른 쇠고기 수입개방계획

연 도	실질관세(%)	mark up	쿼터 량(%)	SBS량(%)	비 고
1993	120	100	99,000	10	
1994	115	95	106,000	20	
1995	113.6	70	126,000	30	
1996	103.2	60	146,000	40	
1997	42.8	0	166,000	50	mark up 적용배제
1998	42.4	0	186,000	60	
1999	42.0	0	206,000	70	
2000	41.6	0	226,000	70	
2001	41.2	0	-	-	완전개방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263%인 수입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소는 mark up이 점차 감소되어 실질관세가 낮아지며, 반대로 업체 자율 구매분인 SBS물량은 연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mark up이 완전배제되어 실질관세가 42.8%로 낮춰지는 1997년과 41.2%의 관세는 완전 수입이 개방되는 2001년까지 원료사입면에서는 크게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돼지고기 가공식품

돼지고기는 1995년부터 1997년 6월까지의 현행관세 25%로, 현행시장접근방식으로 개방되다가 1997년 7월부터는 33%(현행세율+8%)의 관세로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한편 수입량은 다음표와 같이 1995년~1997년 6월까지의 1992년 소비량 기준으로 최소시장접근율은 1995년 3%, 1996년 4%, 1997년 6월까지의 5%로 점차 늘어나가기로 하였으며 완전개방후에는 관세를 연차적으로 낮춰 2004년에는 현행세율을 25%로 합의하였다.

표 22. UR협상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개방 계획

연 도	관 세(%)	현행시장접근율(%)	수 입 량(%)	비 고
1995	25	3	21,930	
1996	25	4	29,240	
1997. 6	25	5	18,275	
1997. 7	33%			전면개방

돼지고기는 국내·외 가격차가 117%로 거의 비슷한 실정이므로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가공업소의 원료사입에 큰 득실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양돈업의 불황시는 수입 돈육의 사입이 유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돈육을 이용한 육가공품인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저가격, 품질 고급화 및 다양화를 내세운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닭고기 이용식품

닭고기도 돼지고기의 경우와 같이 1995년부터 1997년 6월까지의 현행관세 20%로 현행시장접근 방식으로 개방되다가 1997년 7월부터는 30%(현행세율+10%)의 관세로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1995년~1997년 6월까지의 1992년 소비량 기준으로 시장접근율은 1995년 3%, 1996년 4%, 1997년 6월까지의 5%로 점차 늘려 가기로 하였으며, 완전개방후에는 관세를 연차적으로 낮춰 2004년까지 현행세율을 20%로 합의하였다.

표 23. UR협상에 따른 닭고기 수입개방계획

연 도	관 세(%)	현행시장접근율(%)	수 입 량(톤)	비 고
1995	20	3	7,700	전면개방
1996	20	4	10,400	
1997. 6	20	5	6,900	
1997. 7	20			

닭고기는 국내·외 가격차가 212%정도로서 국내산이 약 2배정도 비싼 실정이므로 수입이 개방될 경우, 닭고기 이용식품 가공업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산 닭고기를 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유가공품

우리나라도 다른 낙농국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가격지지제도를 도입·적용하고 있고 생산기반의 확충과 유지라는 낙농기본정책에 의거해 수입을 제한하여 왔는데, 유제품의 수입은 수급용 분유류, 식품공업용원료등 극히 한정된 물량이 수입할당에 의거 도입되었다.

이중 유장분말, 유당, 카제인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적 성격의 제품으로서 그 이용범위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및 기타 가공식품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중 유장분말의 경우 1992년에 21,000톤이 수입되었고, 유당은 8,967톤, 카제인은 6,933톤으로 모두 37,100톤이 수입되었으며, 이 양은 우리나라 원유총생산량의 20%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금번 UR농산물 협정타결로 이들 원료적 성격의 유제품은 고율관세로 수입이 개방되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완제품은 10%정도의 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관련 국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 유장분말 이용식품

유가공품제조업소를 비롯한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장분말(2종)의 경우 현행관세 20%에서 99%로 상향조정되어 1995년 1월부터 개방된다.

현행시장접근방식으로 개방되는 유장분말의 경우 1995년 2만3천톤부터 시작하여 매년 10%씩 물량을 늘려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표 24. 유제품 수입현황, 1980~1992

(단위 : 수량 : 톤, 금액 : 천달러)

구분 연도	유 장 분 말				유 당		카 제 인		전지분유		탈 지 분 유					
	조제분유용		사 료 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 급 용		공 업 용		사 료 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80	4,254	4,030	640	228	7,097	6,061	2,414	6,851	-	-	-	-	208	215	179	148
1981	4,386	3,248	1,393	540	4,165	2,874	1,322	3,975	-	-	-	-	388	476	300	336
1982	7,183	5,109	1,119	480	4,914	2,980	2,469	6,883	1,500	2,399	-	-	155	163	2,033	2,046
1983	7,152	4,847	1,977	760	5,120	2,903	3,270	8,317	2,500	2,789	500	412	410	367	2,551	2,086
1984	7,566	4,514	2,422	987	5,587	2,834	3,976	9,070	1,200	1,320	300	246	310	242	3,523	2,567
1985	7,157	4,203	2,990	1,268	5,130	2,536	4,416	8,556	-	-	-	-	155	129	2,277	1,659
1986	6,326	5,033	3,938	1,780	4,722	3,202	5,313	12,619	-	-	-	-	297	236	-	-
1987	6,800	5,044	3,943	2,130	4,721	3,464	5,508	14,077	-	-	-	-	603	610	-	-
1988	8,000	8,609	6,000	3,811	5,006	3,767	5,326	23,658	-	-	-	-	390	766	-	-
1989	8,800	10,472	5,925	2,803	5,681	4,178	6,036	35,229	-	-	-	-	400	820	-	-
1990	9,398	9,898	4,700	2,003	6,217	4,408	5,760	28,903	-	-	-	-	200	248	-	-
1991	11,793	13,631	7,800	3,859	8,467	5,735	7,259	27,439	4,100	5,843	13,000	17,167	380	574	-	-
1992	11,500	14,876	9,700	5,451	8,967	9,432	6,933	32,735	800	1,333	9,200	15,578	380	629	-	-

자료 : 낙농관계자료 1985~1993

표 25. UR협정에 따른 유장분말 수입개방계획

연 도	관 세 (%)	수 입 량(%)	비 고
1995	99	23,000	○ 1995년 23,000톤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물량을 늘리는 시장접근방식으로 개방 ○ 관세는 2004년까지 50%로 점차 낮춤. (매년 약 5~6%)
1996		25,300	
1997		27,830	
1998		30,610	
1999		33,670	
2000		37,040	
2001		40,740	
2002	44,810		
2003	49,290		
2004	50	54,220	

따라서 현행세율 20%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현행시장접근물량은 가공용으로 사입하더라도 이들 유장분말을 사용하는 제과, 제빵등 관련 완제품의 관세가 10%로 낮으므로 해당업체의 가격 경쟁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 치즈(가공 기타), 조제분유 및 우유 함유제품

치즈와 조제분유는 1995년 1월부터 현행관세인 40%로 수입이 전면 개방되는데, 선진낙농국보다 가격경쟁 및 품질수준이 떨어지는 우리 치즈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3) 버터, 연유 등 그외의 유제품

버터, 연유등 기타 유제품은 실링관세(ceiling binding)를 1995년 1월부터 220% 적용하여 2004년까지 176% 수준으로 하고, 관세 수준 및 수입 자유화 시기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고율관세를 적용받게 될 이들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것이나, 품질면에서 다소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산업에 다소 피해가 예상된다.

(4) 과실음료

1) 주스류

감귤류(오렌지포함)주스는 1995년부터 1997년 6월까지의 현행관세 60%로 수입쿼터를 설정하여 수입되며, 1997년 7월 이후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하여 99%관세로 개방된다.

표 26. UR협정에 따른 주스류 수입개방계획

연 도	관 세 (%)	수입량(쿼터량) %	비 고
1995	60	60,000	현행관세로 수입
1996	60	70,000	
1997. 6	60	40,000	쿼터초과분에 대하여 99%의
1997. 7	99		관세로 완전수입개방

한편 오렌지 농축액의 국내·외 가격차가 약 200% 정도 되므로 1997년 6월까지의 본 오렌지 농축액을 수입하여 과실음료를 가공하는 업소에서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듯하나, 1997년 7월 이후에는 관세가 99%로 상향되므로, 원료수입가격이 국내산과 비슷하게 되어 원료 구입비의 상승이 예상되며, 현행관세로 수입되는 수입완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다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선감귤류(오렌지 포함)

신선감귤류는 1995년부터 1996년 6월까지의 현행관세인 50%에 수입쿼터량을 인정하여 수입되며, 1997년 7월부터는 99%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쿼터량은 매년 12.5% 증량되나, 관세는 2004년까지 50%로 감축된다.

표 27. UR협정에 따른 신선감귤류 수입개방계획

연 도	관 세 (%)	수입량(쿼터량) %	비 고
1995	60	15,000	○ 쿼터량에 대하여는 현행 세율 50% 적용 ○ 매년 12.5%씩 쿼터 증량 관세는 2004년까지 50% 로 감축
1996	60	20,000	
1997. 6	60	12,500	
1997. 7	99	12,500	
1998		28,125	
1999		31,640	
2000		35,595	
2001		40,044	
2002		45,050	
2003		50,680	
2004	50	57,015	

한편 신선오렌지류의 국내·외 가격차를 약 200% 정도 예상할 때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업소에서는 1997년 7월부터는 국내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원료를 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주요 곡물 서류(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이용식품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5개 품목은 1995년 1월부터 10년에 걸쳐 관세상당치(TE)를 평균 24% 감축하는 조건으로 개방된다. 이 가운데 현재 국내소비량의 15%가 수입되고 있는 보리에 대해서는 관세 상당치를 최소폭인 10% 감축할 예정이다.

다음표는 이들 5개품목의 자급율과 국내·외 가격차를 나타낸 것으로서 최소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국내·외 가격차 정도의 관세 상당치를 부과하여 개방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는 현행보다 훨씬 비싼(국산 원료와 비슷한 가격수준) 수입원료를 구입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표 28. 주요 곡물 서류의 수입개방계획

품 목	자급률 (%)	국내·외 가격차(%)	현행관세 (%)	1995년		2004년		비 고
				관세 (%)	최소수입량(%)	관세 (%)	최소수입량(%)	
백주보리	85.0	348	35	570	70,000	513	70,000	최소수입량은 현행세율을 적용하고, 최소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관세상당치를 적용함.
일반보리			20	360	14,150	324	23,582	
옥수수	1.8	-	3	365	6,102,100	328	6,102,100	
콩	17.2	-	5	541	1,032,152	481	1,032,152	
감 자	98.5	363	30	338	12,424	304	20,708	
고구마	94.9	695	20	428	11,121	385	18,535	

주 : 1990~1992년 평균

자료원 : 농림수산부, 농촌경제연구원

(6) 주요 조미원료 이용식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 주요 조미식품 원료는 비교적 국내 자급률이 높은 품목으로서 관세를 최소한 100% 부과하는 실링바인딩(ceiling binding)형식으로 1995~1997년 6월 사이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조미식품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이에 상당하는 실링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개방화 이전보다는 원료수급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표 29. 주요 조미식품 원료의 수입개방계획

품 목	자급률 (%)	국내·외 가격차(%)	현행관세 (%)	1995년		2004년		비 고
				관세 (%)	최소수입량(%)	관세 (%)	최소수입량(%)	
고 추	91.7	533	50	300	4,311	270	7,185	최소수입량은 현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실링바인딩을 적용
마 늘	99.8	261	50	400	8,680	360	14,467	
양 파	98.7	209	50	150	12,369	135	20,645	
참 깨	55	918	40	700	6,731	670	6,731	

주 : 1990~1992년 평균

자료원 : 농림수산부, 농촌경제연구원

특히 국내 작황이 좋지 않아 최소수입량을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더욱 원료비의 상승이 초래될 것이다.

(7) 기타 식품원료의 개방화 계획

1) 통합공고 대상품목

기타곡물, 인삼, 전분류, 종자, 땅콩등 통합공고 대상품목인 94개는 관세화로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2) BOP품목

조란, 꿀, 사과, 과실주스, 생강, 녹차, 잠사류, 매니옥 등 23개 BOP품목중 신선사과, 포도

주스는 실행세율 50%로, 과실음료는 10%로 1995년 1월부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며, 신선포도, 사과주스는 실행세율 50%로 1996년 1월부터 자유화될 예정이고, 여타품목은 실링관세를 적용하여 개방될 계획이다.

IV.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UR협정타결에 따른 농산물의 완전수입개방화는 농업구조가 취약한 우리 현실상 주요가공 식품원료의 해외의존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나, 쌀등 15개 기초 농산물 원료는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국내 농업보호를 위하여 최소시장접근, 현행시장접근, 관세상당치, 고율관세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개방됨으로써, 국내산 원료를 주로 사용해온 육가공, 유가공, 과실음료 등의 시장은 국내산원료의 수급불안정과 함께 해외원료의 공급도 현행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수입완제품은 품질수준,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파급 효과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제도적 대응과 함께 식품산업 주체의 합리적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다.

1. 가공식품 원료의 적정 확보

시장접근물량(정상 관세분)의 가공용 확보

농산물의 전면개방을 통한 국내 산업기반의 급속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국내 부족분 만큼은 기초 수입량(시장접근물량)이라고 하여 비교적 저관세인 현행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물량 중 가공식품용 제조 원료를 우선 배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 적성에 맞는 식품원료의 수급

농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그 품종, 재배지역, 기후 여건 등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므로 가공 적성에 맞는 양질의 원료 확보가 제품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중요한 일이다.

(예 ; 대두로서 대두유, 장류, 두부류등 특성이 상이한 가공식품을 제조)

이를 위하여 정부수입대행기관에서는 수급조절용의 것을 수입·배급하고, 가공용도의 원료분은 해당업체 또는 동업자 조합을 통하여 각각의 가공적성에 맞는 원료를 자율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산 원료의 경우에는 특성에 맞는 원료를 생산하는 산지와 계약재배하거나 직영 농장을 운영하여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는다.

저장 시설의 확대

농·수·축산물등 가공 식품용 원료는 그 특성상 저장기간이 짧아 가격변동 및 품질변화가 큰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업체 단위에서 냉장·냉동시설등 원료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내수 및 수입원료에 대한 시기적 집중현상 및 가격변화를 수용한다.

2. 국제화에 대비한 정보수집 및 기능강화 대책기구 설치

UR전담 조직 설치

각 기업체에 UR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수입개방화와 관련된 원료수급문제, 산업피해 문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업종 분과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의 협상기구에 건의함으로써 기업체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한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중심의 대책기구 설치(안)

한국식품공업협회에 기 조직된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동업체간 대정부 건의 사항을 수렴, 분석, 보강하여 UR관련 정부 협상기구에 이의 적극 반영을 건의하고, 관련제도 개선의 개선을 건의한다. 본 대책기구에서 시급히 수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공식품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 주요원료 시장접근물량의 가공용도로의 우선 배정
 - 검역, 검사제도의 완화(수입원료분)
 - 해당 원료보다 완제품의 관세가 낮은 소위 역관세 완화
 - 수입선 다변화
- 보조금 지원 대상 건의
- 산업 피해 조사
- 상계관세 조사
- 초코렛 등 일부 품목의 특별 소비세 폐지 추진
- 식품산업체 근무 인력의 병역특례화 추진
- 농어촌특별세의 식품산업체 지원 건의
- green round 대비

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국제협력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국제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해외 선진기술의 신속한 이해와 도입을 추구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실천적 과제 수행과 실용화를 제고한다.

- 다양화 고급화 되는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한 신상품의 개발
- 식품의 품질, 안정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포장기술의 개발
- 전자, 고분자 화학, 의약, 의료 등 관련 주변 분야의 기술을 도입한 제조공정의 자동화, 성력화, 품질안전성의 향상
- 환경보호를 감안한 포장, 용기, 폐기물 재이용 기술의 개발
- biotechnology 기술을 활용한 식품소재의 개발
- 국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이용방법의 개발

4.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시장 피해 대응

각종 수입규제장치의 활용

금번 UR협정에서는 반덤핑, 산업피해규제제도, 긴급수입 제한조치, 수출국의 보조금 협정 등이 타결되어 수입품의 불공정 행위 또는 수입 급증으로 관련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본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사안 발생시 적극 활용하고 대처한다.

소비자 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

수입농산물 및 가공 완제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비자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바, 우리의 가공식품이 우리 국민의 식성 및 체질을 가장 잘 감안하여 제조되었다는 홍보전략 수립 및 소비자 활동단체와 연계하여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시장잠식에 대응한다.

V. 결 언

이상 UR협정 주요 부문별 내용을 파악하고, 식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산물 협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주요대응방안으로는 크게 가공식품원료의 적정 확보측면 국제화에 대비한 정보수집 기능 강화 및 대 정부 건의 측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측면, 수입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시장 피해 대응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본 대응방안 대부분 업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협회등의 대정부 협상 및 건의창구를 통하여 시의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UR협정 타결후 1995년 발효까지 금년은 각 회원국의 시장개방계획서를 제출하고, 각료회의를 통하여 인준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식품산업 경쟁국 관련분야의 시장개방계획을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상기에서 제시한 대응방안 이외에 시설투자, 기술혁신, 경영개선등 여러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면 UR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